
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(천하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79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4.

발 의 자 : 천하람 · 김재섭 · 이준석
조은희 · 김용태 · 이주영
양부남 · 정성국 · 용혜인
유용원 · 김준환 · 차규근
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학교 운동회 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, 어린이집 · 유치원에서 영유아의 보육 ·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및 어린이공원 ·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겨 인근 주민이 112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학교 등에서는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, 운동회 및 교육활동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임.

이에, 어린이집,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보육 또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공원 ·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같은 호의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으로써,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· 놀이활동 등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

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항제21호 단서 신설).
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- 가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보육 또는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으로 인한 경우
- 나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또는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동의 놀이활동으로 인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경범죄의 종류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(科料)의 형으로 처벌한다.	제3조(경범죄의 종류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20. (생 략)	1. ~ 20. (현행과 같음)
21. (인근소란 등) 악기·라디오·텔레비전·전축·종·확성기·전동기(電動機)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. <단서 신설>	2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<u>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
<신 설>	<u>가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</u> <u>서의 보육 또는 「유아교</u> <u>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</u> <u>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</u> <u>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</u> <u>서의 「학교안전사고 예방</u> <u>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</u>

<u><신 설></u>	<u>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</u> <u>으로 인한 경우</u>
	나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 공원 또는 「어린이놀이기 구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 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에서 아동의 놀이활동으로 인한 경우
22. ~ 41. (생 략)	22. ~ 41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